

한·페루 FTA 발효의 의의와 주요 활용 방안

권기수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kskwon@kiep.go.kr, Tel: 3460-1081)

박미숙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원 (misookp@kiep.go.kr, Tel: 3460-1105)

차 례 ● ● ●

1. 한·페루 FTA 발효의 의의
2. 한·페루 FTA의 주요 내용
3. 한·페루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페루 FTA의 주요 활용 방안

주요 내용 ● ● ●

- ▶ 2011년 8월 1일부터 한·페루 FTA가 공식 발효됨.
 - 이번 페루와의 FTA 발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이며 우리나라 전체로는 일곱 번째임.
- ▶ 페루의 경제규모(한국의 1/7 수준)를 고려할 때, 한·페루 FTA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보다는 △ 중남미 대표적인 성장엔진 선점 △ 천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중남미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큼.
- ▶ 한·페루 FTA는 △ 상품 △ 서비스 △ 투자 △ 원산지 △ 정부조달 △ 협력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함.
 - 상품부문에서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 및 한·EU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 및 투자분야를 개방하였음.
- ▶ 페루의 경제규모가 크지 않아 한·페루 FTA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장기(향후 10년)적으로 0.01%의 실질 GDP 증가와 5,410만 달러의 경제적 후생증가 효과가 기대됨.
 -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은 1억 5,200만 달러(10년 누적 기준) 증가하는 데 반해 수입은 2,400만 달러 증가에 그쳐, 무역수지 흑자증대 효과는 1억 2,8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 간접적으로는 △ 포괄적 경제협력 기반 구축 △ 중소기업 진출 여건 조성 △ 자원개발 협력 확대 기반 구축 △ 수산협력 확대 기반 조성 △ 수출 저변 확대 △ 한국의 이미지 제고 △ 비즈니스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한·페루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페루산업협력위원회 등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함.
 - 둘째, 각종 양자간 협력체계와 FTA에서 합의한 협력사업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함.
 - 셋째, 지속적인 추가 협상을 통해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FTA 차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넷째, 각종 세미나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함.

1. 한·페루 FTA 발효의 의의

가. FTA 추진 경과

■ 2011년 8월 1일부터 한·페루 FTA가 공식 발효됨.

- 한국과 페루 양국은 2009년 3월 제1차 FTA 협상을 개시한 이후 다섯 차례의 협상 끝에 2010년 8월 협상을 타결 짓고 2011년 3월 FTA에 정식 서명함.
- 이번 페루와의 FTA 발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이며, 우리나라 전체로는 일곱 번째임.

표 1. 한·페루 FTA 추진 경과

일자	추진 경과
2005. 11	APEC 정상회담 시 톨레도 페루 대통령 FTA 추진 제안
2007. 10 ~ 2008. 5	민간공동연구: 서울대학교, CONFIEP
2008. 8. 15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 서한: FTA 협상개시 선언 제의
2008. 11. 21	정상회담시 한·페루 FTA 추진 합의
2009. 3. 16~20	한·페루 FTA 1차 협상(서울)
2009. 5. 11~14	한·페루 FTA 2차 협상(리마)
2009. 6. 29~7. 3	한·페루 FTA 3차 협상(서울)
2009. 10. 19~22	한·페루 FTA 제4차 협상(리마)
2009. 11. 12	한·페루 정상회담: '한·페루 FTA의 조속한 체결' 합의
2010. 8. 29~30	한·페루 FTA 제5차 협상(리마), 타결
2011. 3. 21	한·페루 통상장관 FTA 정식 서명(서울)
2011. 8. 1	한·페루 FTA 발효

자료: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나. FTA 발효의 의의

■ 먼저 한·페루 FTA는 중남미지역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을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큼.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데다 지속적 성장의 토대를 구축한 시장으로 평가됨.

- 페루 경제는 최근 7년간(2004~10년) 연평균 6.8%의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플러스 성장세(2009년 0.9% 성장)를 지속, 중남미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으로 부상함.
- 특히 최근 3년간(2006~08년) 페루 경제는 신흥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연평균 8.8%의 고성장세를 달성함.

표 2. 중남미와 페루 경제성장을 비교

(단위: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2004~10년)
중남미	5.6	4.5	5.4	5.4	4.0	-1.8	5.8	4.1
페루	5.0	6.8	7.7	8.9	9.8	0.9	8.8	6.8

자료: Global Insight.

■ 둘째, 한·페루 FTA는 페루가 갖고 있는 광물에너지, 농림수산자원 등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큼.

-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페루는 지질학적인 이점에 힘입어 무궁무진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2010년 현재 은 매장량은 세계 1위, 동과 창연 매장량은 2위, 주석과 아연 매장량은 3위, 붕소 매장량은 6위에 달함.
- 페루는 최근 대형 유전 및 가스전 발견에 힘입어 중남미 유망 산유국으로도 부상함.
 - 남미 최대의 가스전인 카미세아(Camisea)에는 2,490억 m^3 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셋째, 한·페루 FTA는 중남미 지역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 확보 측면에서도 의의가 높음. 페루는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환경과 지리적 조건에 힘입어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최근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1)에 따르면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기업환경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됨.
- 또한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칠레와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투자등급(S&P BBB-, Moody's Baa3, Fitch BBB-)을 부여받고 있음.

표 3. 세계은행의 기업환경(Doing Business 2011) 순위

국가	2011년 순위	2010년 순위
멕시코	35	41
페루	36	46
콜롬비아	39	38
칠레	43	53
아르헨티나	115	113
브라질	127	124
베네수엘라	172	170

주: 비교대상국은 183개국.

자료: World Bank(2010).

- 페루는 지리적으로도 태평양에 면해 있는 데다 남미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어 남미지역 진출의 전략적 관문으로 가치가 높음.
 - 페루는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카야오(Callao) 항구는 한국과 중남미 간 최단 거리 항구임.

- 특히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남부도로(Interoceanica Sur-IIRSA Sur)가 2010년 12월 완공되어 브라질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로서 페루의 중요성이 더욱 제고될 전망이다.
- ※ 남부도로 완공으로 리마에서 상파울루까지 소요되는 물류(트럭 사용) 기간이 4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다. 한·페루 경제관계

■ 2010년 현재 페루는 한국의 57대 수출국이며 38대 수입국임.

- 수출액은 9억 4,4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0.2%, 수입액은 10억 3,9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0.24%를 차지함.

표 4. 한국의 대페루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0	213	12.5	143	83.1	70
2001	188	-12	116	-18.6	72
2002	196	4.3	205	75.8	-9
2003	204	4.4	194	-5	10
2004	245	19.9	283	45.6	-38
2005	282	15.2	249	-11.9	33
2006	359	27.1	676	170.9	-317
2007	466	29.9	1,040	53.9	-574
2008	720	54.5	904	-13.1	-184
2009	641	-10.9	919	1.7	-278
2010	944	47.2	1,039	13.0	-95

자료: KOTIS, 한국무역협회.

■ 양국의 교역은 일부 품목에 대한 편중도가 높음.

- 수출 품목 중 자동차(39.4%), 합성수지(7.5%), 철강판(5.9%) 등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의 75.4%를 차지함.
- 수입 품목 중에서는 동광(46.7%), 기타금속광물(18.5%), 아연광(16.6%), 석유제품(6.8%) 등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의 97.5%를 점유함.

■ 페루는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주요 자원개발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함.

- 우리나라의 대페루 직접투자액(2010년 누적기준)은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파나마,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큰 7억 7,388만 달러에 달함.
- 대페루 투자는 분야별로 광업(전체의 94.6%), 특히 석유가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주요 투자기업은 삼성, SK, LG, 대우, POSCO, LS-Nikko,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고려아연 등 대기업 위주(전체 투자의 96.8%)임.

표 5. 한국의 대페루 업종별 직접투자 (2010년 12월 누적)

(단위 : 천 달러, %)

업종대분류	신고기준		실질투자기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2,801	0.2	352	0.0
광업	1,377,423	88.1	732,252	94.6
제조업	150,098	9.6	9,572	1.2
건설업	235	0.0	235	0.0
도매 및 소매업	30,755	2.0	29,195	3.8
운수업	636	0.0	636	0.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0	0.0	100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983	0.1	1,544	0.2
총계	1,564,031	100.0	773,886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 한 · 페루 FTA의 주요 내용

가. 상품시장 개방(관세 철폐)

- 한국과 페루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합의함.
 - 수입액 기준으로 양측 모두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함.
- 페루 측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냉장고 등을 즉시 또는 10년 내 철폐하기로 함.
 - 대형 승용차(현행 관세율 9%)와 컬러 TV(9%)의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중형 승용차의 관세는 5년 내, 냉장고(17%)의 관세는 10년 내 철폐하기로 함.
- 우리나라는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 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 계절관세 △ 장기 관세철폐 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함.
 - 우리 측은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202개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 기간을 설정함.
 - 페루 측은 관심품목인 오징어(현행 관세율 10~22%) 중 냉동, 조미, 자숙, 건조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내, 기타 오징어에 대해서는 5~7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표 6. 상품 양허 수준

양허단계	한국 양허				페루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천 달러)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 달러)	비중
즉시 철폐	10,044	84.5%	915,668	94.2%	5,001	67.9%	464,927	74.2%
3년내 철폐	223	1.9%	407	0.0%	58	0.8%	312	0.0%
5년내 철폐	609	5.1%	18,655	1.9%	936	12.7%	90,540	14.4%
(5년내 소계)	10,876	91.5%	934,730	96.2%	5,995	81.3%	555,780	88.6%
8년내 철폐	170	1.4%	12,464	1.3%	51	0.7%	3,656	0.6%
10년내 철폐	524	4.4%	24,692	2.5%	1,240	16.8%	67,512	10.8%
(10년내 소계)	11,570	97.4%	971,886	100%	7,286	98.9%	626,948	100%
10년 초과	202	1.7%	0	0.0%	79	1.1%	0	0.0%
계절관세	2	0.0%	0	0.0%	-	-	-	-
현행관세/양허제외	107	0.9%	1	0.0%	4	0.1%	0	0.0%
총합계	11,881	100%	971,887	100%	7,370	100%	626,948	100%

주: 1) 품목수는 HS 2010 기준, 수입액은 2007~08년 평균 금액 기준.

2) ASG 적용품목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자료: 외교통상부.

표 7. 상품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한국 양허		양허유형	페루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아연광, 연광, 동광, 니켈광, 철광, 나프타, 고철, 원유, 석탄, 윤활유, 금, 은, 보석, 승용차, 자전거, 타이어, 카메라, 시계, 건전지, 가죽제품(벨트 등), 모피의류, 견사, 신사복, 언더셔츠, 모자, 커피, 설탕(원당), 향신료(야프란)	10,044	즉시 철폐	대형 승용차(3개 세번), TV(컬러, 흑백), VCR, 전기밥솥, 라디오카세트, 일부, 자동차 부품, 카스테레오, 무선전화기, 선박, 화물자동차, 타이어, 라이터, 손목시계, 오락용구, 기타 합성섬유, 녹차, 배, 사과	5,001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 아보카도(신선건조), 위스키, 파스타, 식빵, 비스킷, 어류통조림(정어리)	223	3년 철폐	면도기, 이발기, 항공기 엔진	58
-	-	4년 철폐	세탁기	2
연과, 스웨터(면제), 코르크, 바나나, 라임, 포도주, 캐비아 대용물, 어류의 유지	609	5년 철폐	중형 승용차(3개 세번), 진공청소기, 의료위생용품, 종이제품, 설탕(정당), 필터담배, 맥주, 위스키, 인삼	934
옥수수(종자용), 소모사, 봉장어(냉동 필레트)	170	7년 철폐	일부 철강제품	40
-	-	8년 철폐	장신구, 황산	11
아연과, 일부 연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소시지, 오징어(냉동, 조미, 자숙, 건조), 고등어(냉동)	524	10년 철폐	기타 승용차, 냉장고, 고무관, 모포류, 혼방면사, 폴리에스테르직물, 신발류, 부직포, 인쇄용지, 접착제, 연축전지, 비누, 섬유판, 오리고기, 돼지고기	1,240
(ASG)닭고기(냉장), 오리고기(냉동), 체다치즈, 무당연유, 녹두, 팔				
난황	2	12년 철폐	쇠고기(냉동 절단), 설탕(원당)	24
발효주정	1	15년 철폐	버터, 발효유, 빙과류	20
돼지고기(삼겹살), 버터, 녹차, 설탕(정당), 참기름, 필터담배	199	16년 철폐	-	-
(ASG)천연꿀, 맨더린				

표 7. 계속

한국 양허		양허유형	페루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	-	17년 철폐	35	닭고기, 치즈
포도, 오렌지	2	계절 관세	-	-
쇠고기(신선, 냉장, 냉동), 고추, 마늘, 양파, 감귤(온주밀감), 보리, 사과, 배, 탈·전지분유, 치즈, 인삼류, 대두, 밤, 대추, 민어(냉동), 명태(냉동), 오렌지주스	91	현행관세 유지	-	-
쌀	16	양허제외	5	쌀

자료: 외교통상부.

나. 원산지

■ 한국과 페루는 양국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한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규정에 합의함.

-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 해외조립 비율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도입함.
- 완성차를 제외한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원자재 수입 및 글로벌소싱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양국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한 역외가공 조항에도 합의함.

다. 무역구제

■ 양국은 관세 감축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를 MFN 관세율까지 인상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함.

- 이와는 별도로 닭고기, 오리고기,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맨더린, 녹두·팥 등 7개의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를 채택함.

라. 서비스 및 투자

■ 우리나라는 한·미 FTA 및 한·EU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개방하였으나 전기, 가스, 방송통신 등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규제권한을 확보하고 공교육, 의료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미개방하는 등 개방수준을 조절함.

- 페루는 전기·가스·발전 서비스를 양허하는 등 페루·미국 FTA를 제외하고 페루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개방함.

■ 투자 분야에서는 기존 한·페루 투자협정에 비해 투자 보호수준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특히 개별 유보를 통해 우리의 민감한 분야인 농·축산물 관련 유통 및 저장, 방송·통신, 전문가(법률, 회계, 세무) 등의 분야는 개방 수위를 조절함.

■ 인력이동과 관련, 양국은 일시 입국을 통한 서비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국의 출입국 조치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용방문자, 무역가 및 투자자, 기업 내 전근자, 전문가(조리사 및 통번역사 등) 등에 대한 비자발급을 규정함.

마. 정부조달

■ 양국은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입찰 및 낙찰 시 과거 조달실적 요구를 금지하기로 합의함.

- 특히 양국은 정보교환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참여를 촉진하고, 양국 중소기업 간 공동 입찰 참여를 장려하기로 함.

3. 한·페루 FTA의 경제적 효과

가. 거시경제 효과

■ 페루 경제 규모가 크지 않아 한·페루 FTA 체결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기준으로 페루의 경제 규모(1,525억 달러)는 한국(1조 147억 달러)의 1/7 수준임.

■ 한·페루 FTA 발효에 힘입어 단기(향후 5년)적으로 0.0002%의 실질 GDP 증가, 1,940만 달러의 경제후생증가 효과가 기대됨.

- 장기(향후 10년)적으로는 0.01%의 실질 GDP 증가, 5,410만 달러의 후생수준 증가가 예상됨.

표 8. 한·페루 FTA의 경제효과

	단기(5년)	장기(10년)
실질 GDP(%)	0.0002	0.01
후생수준(백만 달러)	19.4	54.1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 산업별 효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페루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은 1억 5,200만 달러(10년 누계 기준), 수입은 2,4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높은 수출증가세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증대 효과는 1억 2,8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표 9. 산업별 수출입 증감 효과(10년 누계)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증감	수입 증감	무역수지 증감
섬유	23	17	6
석유화학	1	0	1
정밀화학	12	2	10
철강	1	0	1
비철금속	0	5	-5
기계	0	0	0
자동차	68	0	67
자동차부품	0	0	0
전기전자	29	0	29
생활용품	7	0	7
기타	10	0	10
제조업	152	24	128

자료: 산업연구원.

■ 산업별 수출입 증감 효과

- 산업별로는 자동차의 수출증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전기전자, 섬유, 정밀화학 순으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반면 수입증대 효과는 섬유, 비철금속 순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산됨.
-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자동차, 전기전자, 정밀화학 순으로 무역수지 흑자 효과가 클 전망이다.
-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섬유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한 반면, 페루는 상당품목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해 대페루 수출증대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대페루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중 전기전자의 경우, 페루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관세를 양허해 FTA 발효 즉시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이 페루로부터 수입하는 대부분의 품목인 비철금속, 천연자원의 1차 가공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무관세에 가깝기 때문에 전체 가중평균 관세율도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임.
- 결과적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10. 한·페루 간 산업별 수출입 및 관세율(2007~09년 평균기준)

	대페루 수출				대페루 수입			
	수출		관세율		수입		관세율	
	금액 (백만 달러)	비중 (%)	단순평균 (%)	가중평균 (%)	금액 (백만 달러)	비중 (%)	단순평균 (%)	가중평균 (%)
섬유	27	4.5	13.30	9.68	13	1.5	11.11	10.15
석유화학	66	10.9	0.75	0.14	0	0.0	6.50	6.50
정밀화학	41	6.8	4.73	2.90	1	0.1	6.05	6.28
철강	59	9.7	1.40	0.28	1	0.1	3.56	0.03
비철금속	0	0.0	2.40	1.13	14	1.6	5.38	2.01
기계	43	7.0	0.87	0.04	0	0.0	7.56	4.46
자동차	172	28.3	3.80	5.73	0	0.0	9.43	9.17
자동차부품	17	2.8	1.16	0.03	0	0.0	8.00	8.00
전기전자	77	12.6	2.23	3.73	0	0.0	4.09	1.41
생활용품	22	3.7	7.26	2.23	0	0.0	7.44	5.97
기타	83	13.6	5.18	1.61	863	96.6	2.73	0.00
제조업	607	100.0	4.02	3.07	893	100.0	8.44	0.19

자료: 산업연구원.

다. 기타 경제 효과

1) 서비스

- 한·페루 FTA 발효에 힘입어 그간 전무했던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기대됨.

- 페루 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 저조로 단기적 투자 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확대에 편승해 서비스 분야의 협력 확대가 예상됨.

- 기업인의 일시 입국 허용에 따라 우리 기업인들의 이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비자발급의 어려움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2) 투자

- 한국의 대페루 투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 한·칠레 FTA 사례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대페루 투자는 FTA 발효 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의 대칠레 직접투자는 한·칠레 FTA 발효 전 5년 평균 148.3만 달러에서 발효 후 5년 평균 888.6만 달러로 약 여섯 배 이상 증가함.
- 페루 정부는 한·페루 FTA 체결로 3년 내 한국의 대페루 직접투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투자진출 분야의 다각화 기대

- 기존 광업분야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농산물 및 바이오에너지, 물류서비스 및 컨설팅, 수산분야 등으로 투자분야의 다각화가 기대됨.
- 특히 남미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 다수국가와의 FTA 체결, 풍부한 원료와 값싼 노동력 등 페루가 갖고 있는 이점에 힘입어 제조업 분야의 투자 확대도 예상됨.

3)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강화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소프트웨어 상품의 모조품 거래 및 불법복제 축소로 우리제품의 수출 확대가 기대됨.

- 현재 페루에서는 음반의 98%, 상용소프트웨어의 70%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페루 정부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비중은 75%에 달함.

4) 정부조달

■ 정부조달시장 개방, 건설자재의 관세 철폐 등에 힘입어 우리 건설·플랜트 업체의 페루 시장 진출¹⁾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페루 FTA 정부조달협정문에 입찰 및 낙찰 시 과거실적 요구 금지 조항을 포함시켜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시장에 우리 업체들이 보다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 또한 입찰 및 낙찰 공고, 이의신청 절차 등에서 투명성 의무 조항을 명시하는 등 입찰 절차가 투명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정보교환,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있어 경쟁력은 있으나 아직까지 페루시장 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우리 중소기업들의 페루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1) 현재 우리 기업들이 페루 건설플랜트시장 진출 시 겪는 장애요인은 치안불안, 자금조달, 입찰과정 불투명, 인력고용 및 숙련노동 확보, 정보접근, 원주민 사회와의 갈등 등으로 조사됨(KIEP 2009).

- 한편 현재 9%인 중장비 부품이나 철강판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현지 진출한 우리 건설업체들이 보다 저렴하게 부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입찰 시 우리 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건설자재의 관세인하에 따른 효과로 우리 건설업체들이 혜택을 본 사례는 한·칠레 FTA에서도 목격됨.
- 포스코건설은 한·칠레 FTA 체결로 6% 관세가 철폐되어 보일러를 무관세로 조달,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면서 칠레에서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였음.

5) 기타 경제협력

■ 포괄적 경제협력 기반 구축

- 기존 FTA와 다른 한·페루 FTA의 특징은 FTA 협정문에 양국이 관심 있는 10개 협력분야(중소기업, 어업 및 양식, 산림, 에너지·광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해양 운송, 문화, 농업)를 명시하고 협력 추진의 중심체로 협력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는 점임.
- 이에 따라 양국은 FTA 발효를 기회로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음.

■ 중소기업 진출 여건 조성

- 한·페루 FTA는 양국간 중소기업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서도 주목됨.
- 페루를 위시한 남미시장은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격차에 따른 심리적 거리감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임. 이에 따라 페루는 지금까지 대기업 주도의 진출 시장이었음.
- 한·페루 FTA에서는 양국간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 대표적으로 제20.4조에서 양국간 중소기업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조항을 별도로 명시함.
-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페루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자원개발 협력 확대 기반 구축

- 한·페루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최초로 에너지·자원협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특히 자원개발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우리 자원개발 기업들의 페루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수산 협력 확대 기반 조성

- 한·페루 FTA 발효 후 2년 이내에 수산협력약정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페루 수산부문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됨.

표 11. 한·페루 FTA 중 에너지·자원 협력 분야 주요 내용

- 원유, 가스 및 광물자원 탐사, 개발, 생산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활동의 개발 및 촉진을 규정
 - 특히 양국간 에너지·광물의 교역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 에너지·광물 자원에 대한 입찰, 투자기회, 지질 데이터 정보, 관련 법령 등 에너지·광물 분야의 공개 정보 교환 촉진
- 양국간 에너지·광물 자원 협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규정은 가능한 범위에서 상대방에 사전 통지
- 상대방 요청 시, 에너지·광물 자원 협력 관련 모든 규정에 대해 정보 제공

■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수출품목 수 확대 등 수출 저변 강화

- 한·페루 FTA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페루의 경우 지리적 거리감, 언어적·문화적 격차로 인해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시장이었음.
 - 그러나 한·페루 FTA 체결에 힘입은 관세인하 효과, 비관세장벽 철폐 등 비즈니스 환경개선, 제도적 안정성, 심리적 거리감 축소 등의 효과에 힘입어 중소기업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이 같은 기대는 한·칠레 FTA 사례를 통해서 증명됨.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대칠레 수출시장에 신규 진출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2004년 이후 칠레시장에 신규 진출한 기업은 총 2,425개에 달했는데, 이 중 중소기업은 1,954개로 전체 신규 진출기업의 96%를 차지함.
- 또한 한·페루 FTA는 현재 우리 기업의 페루 시장에서 빈약한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09년 현재 페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품목은 857개로 매우 적은 상황임. 특히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쏠림 현상이 심해 페루 경제의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
 - 한·칠레 FTA 사례²⁾에서 보듯이 한·페루 FTA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품목 확대에도 기여, 안정적 수출구조 형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수출품목 수는 HS 10단위 기준으로 2003~09년 사이 37.4% 증가함(1,118개 → 1,536개).

■ 한국의 이미지 제고

- 페루 현지에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는 기업들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항 중 하나임.
 - 페루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KIEP 2009년)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중 “현지국에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가 가장 큰 요구사항으로 조사됨.
- 페루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한·페루 FTA 발효는 한국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미지를 단시일 내에 제고시킬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음.
 - Nexos라는 기관이 2009년 실시한 칠레와 페루에서 세계 각국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칠레에서 한국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10위를 기록한데 반해, 페루에서 한국의 인지도는 순위 안에도 포함되지 못함.

2)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수출증가의 특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한성·장용준(2010), 「한·칠레 FTA에 따른 수출 증가의 특징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0-2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 비관세장벽 철폐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 무역원활화를 통한 통관절차 간소화, 세관행정의 투명성 증대 등에 힘입어 우리 기업들의 페루 시장 진출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 우리 기업들은 페루 시장에서 FTA를 통해 관세철폐만큼이나 비관세장벽 철폐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³⁾

4. 한 · 페루 FTA의 주요 활용 방안

가.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협력 체계 조속 구축

- 한 · 페루 FTA의 특징 중 하나는 FTA 협정문에 협력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양국이 관심 있는 10개 협력분야(중소기업, 어업 및 양식, 관광, 산림, 에너지 · 광물, 과학 · 기술, 정보 · 통신기술, 해양 운송, 문화, 농업)를 제시했다는 점임.

- 특히 양국은 10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구심체로 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음.

- 따라서 FTA 발효 이후 경제협력의 총체적 효과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위원회를 신속히 설립할 필요가 있음.

- 협력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가 브라질, 콜롬비아와 운영하고 있는 ‘산업협력위원회’⁴⁾와 일본이 중남미 FTA 체결국과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를 벤치마킹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중남미 FTA 체결 대상국(멕시코 및 페루)과 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를 설치, 자국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 채널로 적극 활용해오고 있음.
- 현재 우리 기업의 페루 투자진출 확대에 따라 현지에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

3) 2009년 KIEP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이 페루와 FTA 체결 시 기대하는 혜택은 관세철폐(33.3%), 비관세장벽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27.8%), 기업인 및 기술자의 이동 원활화(22.2%), 투자 및 정부조달 시 내국민 대우(11.1%), 서비스자유화(5.6%) 순으로 나타남.

4) 현재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및 콜롬비아와 포괄적 산업협력 추진을 위해 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음. 브라질과는 2008년 11월 대통령의 남미 순방 후속조치 중 하나로 정부간 산업협력 채널이 구축되었음. 현재 두 번에 걸쳐 양국간 회의가 개최됨.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원회는 2008년 11월 합의되어 2009년 3월 MOU가 체결되었음. 제1차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원회는 2009년 11월 서울에서, 2차 산업협력위원회는 2010년 9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됨. 제2차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원회 주요 의제는 양국 무역 · 경제 현황, 콜롬비아 산업정책, 산업협력 공동연구결과 발표, 자동차 · 섬유 · 소프트웨어 협력, 한국 산업기술정책, 플랜트협력, 경제단체간 협력, FTA 등이었음.

나 페루 정부와의 상시적인 협의 채널 부재로 우리 기업들이 겪는 비즈니스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임.

나.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을 통한 FTA 시너지 효과 도모

■ 현재 페루와 추진 중인 수산 협력협정을 신속히 체결해 한·페루 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의 자원협력위원회 등 각종 양자간 협력체제와 FTA에서 합의한 협력사업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지속적인 추가 협상을 통해 FTA 차별에 따른 피해 최소화

■ FTA를 서둘러 체결해 시장 선점효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국이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FTA를 체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피해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FTA 체결에 따른 선점 효과는 다른 경쟁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마련임. 그러나 경쟁국이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FTA를 체결할 경우 선점 효과에 따른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역차별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 중국보다 일찍 칠레와 FTA를 체결해 칠레 시장에서 FTA 선점효과를 누렸으나 2006년 중·칠레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경쟁우위는 자연스럽게 효력을 상실함.
- 문제는 중국의 경우 관세혜택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넓다는 점임. 실제로 중·칠레 FTA에서 관세면제 품목의 비중이 90% 이상이 되는 시기가 우리나라(2017년)보다 2년 앞선 201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페루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FTA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니터링하여 관세인하 일정 등의 차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대표적으로 세탁기의 경우 중·페루 FTA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데 반해 한·페루 FTA에서는 4~5년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어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또한 에너지 관련 분야 등 개방이 유보된 분야와 통신, 금융, 운송 등 각종 제한을 두고 개방된 분야의 경우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개방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특히 제한을 두고 개방된 분야의 경우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임.

라.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상대국과의 수출입 시 특혜관세 활용도는 칠레를 제외하고 매우 낮은 상황임.

- 2008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FTA 체결국과의 교역에서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무관세이거나 큰 실익이 없어서(39%)인 것으로 조사됨.
- 그 밖에 FTA 체결 상황이나 활용방법을 잘 몰라서(37%), 원산지 증명에 대한 상대국 바이어의 요청이 없어서(16%), FTA 활용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11%)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⁵⁾

■ 따라서 한·페루 FTA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양국간 협력 분위기가 최고로 고조되는 FTA 발효 직후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 FTA 체결로 바뀌는 대페루 진출 환경을 기업들에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상품부문의 특혜관세 활용률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 FTA에 포함된 다른 부문의 이행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모니터링을 하여 FTA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KIEP

5) 한국무역협회(2008. 8), 『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